

주식회사 심택(이하 “심택” 이라 함)의 협력회사 윤리경영 행동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은 협력회사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한편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심택이 협력회사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합니다. 심택은 필요에 따라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심택은 본 규정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협력회사의 사업장을 방문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 1 장 근로자 인권 존중(Labor)

### 제 1 조(자발적 근로(강제노동 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가능한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되고, 근로자는 희망 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용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제 2 조(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

협력회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은 만 15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연장/야간 근로를 하면 안되고,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에 투입되면 안됩니다. 실습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 제 3 조(근로시간)

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단, 국외의 경우는 현지법 기준을 따릅니다. 또한, 매 7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 제 4 조(임금과 복리후생)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법정 최저임금기준 이상 지급해야 하고, 연장 또는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로 임금에 대한 삭감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급여내역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제 5 조(인도적 대우)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 제 6 조(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채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취향, 성적체성, 국적, 출신민족, 장애유무, 결혼 및 임신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가입여부에 근거해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의료검진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제 7조(결사의 자유)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집단교섭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 보복,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 2 장 안전한 작업환경(Health & Safety)

### 제 8조(산업 안전)

협력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노출 가능성 파악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설계, 기술적/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안전규정 마련,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잘 관리된 개인보호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하며 임산부가 위험환경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제 9조(비상 사태 대비)

협력회사는 발생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비상사태를 분류해 정의하고, 사태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비상구는 상시 개방이 가능해야 하고, 전임직원 참여 정기 피난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대피능력을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 제 10조(산업 재해와 질병 예방)

협력회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①근로자 보고장려, ②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③필요 의료 처치 제공, ④사례 조사 및 시정 조치 시행, ⑤근로자 복귀 촉진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 11조(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협력회사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영향을 파악하고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관련 위험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제 12조(육체적 과중 업무)

협력회사는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장시간 서있는 업무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을 파악하고, 공정개선 순환근무 등의 조치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제 13조(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협력회사는 모든 생산 및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상해위험이 있는 경우, 물리적인 방호물, 안전장치,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합니다.

### 제 14조(식당과 기숙사 관리(위생, 식품, 주거))

협력회사는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보관/취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또는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비상구/온수/조명/난방/환기장치/사물함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제 15조(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제 3장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Environment)

#### 제 16조(환경 법규 준수(인허가 및 보고))

협력회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를 취득, 유지하고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제 17조(오염예방과 자원사용 저감)

협력회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로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제 18조(유해 물질)

협력회사는 유출 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해당물질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제 19조(고형 폐기물)

협력회사는 발생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재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제 20조(대기배출 가스)

협력회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연소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관련해 배출가스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 제 21조(제품 및 공정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협력회사는 재활용 및 폐기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의 금지나 제한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 심택의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제 22조(물관리)

수원과 물사용 및 배출의 기록, 관리를 통해 오염경로를 통제하는 등 물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폐수는 처리효율을 기록하고 기준치 내로 배출해야 합니다.

#### 제 23조(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회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해 연료소비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제 4장 기업 윤리 준수(Ethics)

#### 제 24조(윤리경영 준수 및 사업 청렴성)

협력회사는 심택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제 25조(부당이익 금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반 부패 법령 자율준수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 제 26조(정보 공개)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안전보건/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 제 27조(지적 재산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 이전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심택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제 28조(공정거래, 광고와 경쟁)

협력회사는 적용가능한 담합 금지 등과 같은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 및 기술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 29조(신원 보호와 보복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관련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제 30조(개인 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임직원 포함)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정보법안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제 5장 합법적 원자재 채굴(Responsible Sourcing)

### 제 31조 (원자재)

협력회사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예: 무장세력이 점거한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 산림 보존 및 벌목금지 지역에서 벌목된 목재 등)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관련 정책 내에 분쟁광물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심택으로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에 포함된 3TG(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가 콩코민주공화국이나 인접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을 유린하는 무장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원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심택으로 공급하는 원자재/부품/제품 내 3TG 광물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심택의 요청에 따라 실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 6장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

### 제 32조 (기업의 준수 의지)

본 행동규정의 준수 책임자로서 협력회사 경영진은 준수의지를 문서로 표명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 제 33조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하며, 이들은 경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 점검해야 합니다.

#### **제 34조 (외부 요구사항 대응)**

협력회사는 본 규정을 포함한 최신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 모니터링,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제 35조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발생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리스크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현황을 경영진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제 36조 (목표 수립과 관리)**

협력회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제 37조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회사는 본 규정과 법규준수를 위해 관리자/근로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근로자, 하위 협력회사, 심택과 공유해야 합니다.

#### **제 38조 (임직원 의견수렴과 개선)**

협력회사는 효과적인 고충 처리 절차를 포함하여 본 규정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수준을 평가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 **제 39조 (감사 및 평가)**

본 규정을 비롯해 현지 관련법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자가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제 40조 (시정 조치 프로세스)**

내부 혹은 외부 평가와 검사,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을 적절하게 시정하기 위한 절차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 **제 41조 (문서화 및 기록)**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 **제 42조 (공급업체 책임)**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회사에게도 본 규정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하며, 준수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